

예산총칙

202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19,551,677	12,586,550
일반회계	371,410,067	11,142,302
특별회계	48,141,610	1,444,248
공기업특별회계	14,228,727	426,86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228,727	426,862
기타특별회계	33,912,883	1,017,386
수질개선 특별회계	13,780,780	413,423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008,581	30,257
주택사업 특별회계	4,807,123	144,214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906,518	27,196
자활기금 특별회계	1,971,015	59,130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9,983,484	299,505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195,030	35,851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226,086	6,783
기반시설 특별회계	34,266	1,028

제 2 조 세입 및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및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54,446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8,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